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국회의원협의회 설치〉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93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수진 · 백혜련 · 전종덕 · 김병주 · 최혁진 · 김문수
남인순 · 전진숙 · 임미애 · 김남희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6. 2. 2.

3. 회 부 일 : 2026. 2. 3.

※ 의안번호 : 1649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2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2026년 2월 2일 기준) 중 63명으로 그 비율은 21.3%에 그치며,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명 중 36명으로 14.4%에 불과함. 이는 OECD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33.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제21대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국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고,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

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구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 4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4(여성국회의원협의회) 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위한 성평등 입법,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둔다. ② 여성국회의원협의회는 여성인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별(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제외한다)로 1명을 둔다. ④ 여성국회의원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여성국회의원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⑥ 여성국회의원협의회는 성평등 증진과 관련하여 의장이나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장이나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⑦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구성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정치대표성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고, 이에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성별 간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은 성평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¹⁾

그러나 우리 국회의 여성의원은 제22대 국회(2026년 7월) 기준 전체 의원 300명의 약 21.3%인 64명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²⁾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³⁾ 이러한 성비 불균형에 대해 제21대 국회의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⁴⁾는 그 개선 방안의 하나로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초당적 협의기구(여성의원 전원회의)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음.⁵⁾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은 성평등 관련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 내 공식 기구인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제도화함으

1)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권고」, 2022.3.14.

2) <대별 여성국회의원 당선자 현황>

구 분	총의원수			지역구			비례대표		
	총의석	여성	비율	의석수	여성	비율	의석수	여성	비율
제17대(2004년)	299석	39명	13.0%	243석	10명	4.1%	56석	29명	51.8%
제18대(2008년)	300석	41명	13.7%	245석	14명	5.7%	54석	27명	50.0%
제19대(2012년)	300석	47명	15.7%	246석	19명	7.7%	54석	28명	51.9%
제20대(2016년)	300석	51명	17.0%	253석	26명	10.3%	47석	25명	53.2%
제21대(2020년)	300석	57명	19.0%	253석	29명	11.5%	47석	28명	59.6%
제22대(2024년)	300석	60명	20.0%	254석	36명	14.2%	46석	24명	52.2%

주) 의원수는 각 국회의원선거 당시의 당선인 기준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3) 국제의회연맹(IPU)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조사대상 193개국 중 126위 수준임 (2024.1. 기준). e-나라지표,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4) 2012년 국제의회연맹(IPU) 제127차 총회에서 채택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의 실천과 성평등 국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구성되어 같은 해 8월까지 활동하였음.

5)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안」(자문위원회 활동보고서, 2021)의 권고사항: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후보 공천 시 여성을 30% 이상 의무 추천, ②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 제정, ③ 여성의원 전원회의 구성, ④ 성평등 국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성평등 국회 운영 지원조직 신설, ⑤ 국회인권센터의 위상 제고

로써, 성평등 입법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회 운영 등에서의 성평등을 촉진하려는 취지임.

현재 국회에서 성평등 관련 현안에 관한 논의는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자율적 의원모임인 국회의원연구단체⁶⁾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경우 소관주의 원칙상 해당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입법 활동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기에 한계가 있고, 국회의원연구단체는 그 구성 여부와 참여 인원이 가변적이므로 논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⁷⁾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여성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의 국회 운영 및 입법활동 증진과 더불어, 여성의원 모임의 안정성 및 연대 강화를 통해 국회 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이 상임위원회와 달리 의견 수렴 및 제시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성평등 논의의 활성화에 법정 기구가 필수적인 요소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6)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국회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연구단체”란 입법 또는 국가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국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

2. 삭제

3. 다른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이 1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7) 성평등 또는 인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연구단체는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인권포럼’(2024.5. 기준 회원 11명), ‘약자의 눈’(10명), ‘여성·아동 인권포럼’(10명) 등이 활동하였고, 제22대 국회의 경우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2026.2. 기준 회원 11명), ‘약자의 눈’(15명) 등이 있음.

보임.

참고로, 외국의 여성의원협의체 구성 사례를 보면, 법률상 명시된 공식 기구보다 자발적인 연대에 기초한 의원모임을 구성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표-2] 외국 의회의 여성의원협의체 사례

국 가	여성의원협의체
인도네시아	여성의원모임(KPP-RI): 상·하원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여성의원 간 교류·협력, 여성정책 입안 등을 수행함(2001년 설립)
미 국	여성의원코커스(Caucus for Women's Issues): 하원의 여성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으로, 여성 관련 입법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1977년 설립)
영 국	의회 내 여성(Women in Parliament): 상·하원 여성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로, 여성정치인 확대 및 여성의원 의원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함(2012년 이전 설립)
핀란드	여성의원 네트워크(Network of Finnish Women Members of Parliament): 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 모임으로, 여성 관련 정치적 이슈에 대한 초당적 토론 등을 주관함(1991년 설립)

*출처: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안」(2021) 부록 pp.109~123

문 의 처
02)6788-5014